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5월 2일
- 회부일자 : 2001년 5월 3일

3. 제안이유

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 기술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
 - 위 원 장 : 기획조정실장 → 건설교통국장
 - 부위원장 : 건설교통국장 → 지역개발과장
 - 간 사 : 과장 → 업무담당사무관
 - 서 기 : 담당사무관 → 담당자
- 위원 임명 대상범위 확대
 - 도내외 전문가 →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함

-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
 - 임기를 2년으로 하되 →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
- 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리
 - 건설기술심의대상 및 심의범위 일부 삭제(제9조 및 제10조 제1항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,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업무 기능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한편 위원 임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